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범위가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역할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및 품질관리 총괄 지원 등 공간정보 통합 관리 전담기구로 확고히 하는 한편,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를 정보의 성격과 신청 주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디지털트윈국토 활성화 및 관리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범위에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 구축·운영 사무를 신설함(안 제4조)
- 나. 전산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와 지적전산자료 관리규정을 통합함(안 제6조)
- 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절차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3)
- 라. 전산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공간정보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신청 대상과 신분증 범위를 확대함

(안 제7조)

마. 이원화된 신청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본인정보 제공 동의란을 신설하여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함(안 제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등을 말한다.”를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70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센터는”을 “공간정보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으로, “수행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시스

템”을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시스템”을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으로 한다.

1. 공간정보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의 유통

7. 공간정보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

8. 공간정보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수집, 가공”을 “수집·저장·가공·분석”으로, “구축”을 “구축·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스템”을 “시스템 및 플랫폼”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공·유통”을 “분석·유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가공, 제공,”을 “분석·제공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공간정보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법 제2조제4호”로 한다.

9.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공간정보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을 “공간정보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공간정보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간정보의 품질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법 제19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3(오류정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관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교육 및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자료의 이용신청 등)”을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를

“자는”으로,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은 제1항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장 :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인 : 신분증,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리인이 제2항제2호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를 “제공받은 자”로, “공간정보 자료의”를 “해당 자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유통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유통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지적전산자료의 관리)”를 “(공간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적전산자료”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3조 앞의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전산매체에 담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15조 앞의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사무처리 등

제17조 앞의 “제6장 사무처리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 연계·운영 및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을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지침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심사”를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여권 또는”을 “국가보훈등록증, 여권,”으로, 같은 서식 중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기관)			
이용목적			
활용방안			
근거법령			
보안대책			
이용자료	이용자료명		
	지적전산자료	[] 포함 [] 미포함	개인정보 [] 포함 [] 미포함
	신청인원 명 * 지적전산자료(토지소유현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요청범위 [] 전국, [] 시·도(), [] 시·군·구()		
자료형태 및 수령방법	자료형태	[] 전자파일 [] 출력물	
	수령방법	1.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표준연계모듈 []행정정보공공동이용 []Open API) 2. 기타 ()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공통서류	1. 국가공간정보이용신청서 1부. 2.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 계획서 1부.	○ 수수료 - 지적전산자료(1필지당) 출력료(30원), 전자파일(20원) - 그 외 공간정보 : 없음
	지적전산자료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 1부.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결재]
    D --> E[통보]
  
```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 또는 시·군·구)

- 11 -

민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자료	조회방법 [] 등록번호 조회 [] 소유자명 조회			
	자료범위 [] 전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리 * 지역명 : _____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필요 서류	1. 민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본인정보제공 동의 가능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2. 기본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70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공간정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위하여----- ----- ----- -----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공간정보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 말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유통	1. 공간정보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의 유통
2. ~ 6. (생략) <신설>	2. ~ 6. (현행과 같음) 7. 공간정보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
<신설>	8. 공간정보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7.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① (생략)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4. (생략)

5.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공간정보의 가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

③ -----
---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수집·저장·가공·분석 --- 구축·관리-----

3. 4. (현행과 같음)

5. ----- 시스템 및 플랫폼 -----

6. (현행과 같음)

7. ----- 분석·유통 -----

8. ----- 분석·제공 및 ---

사항

9.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③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9.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 공간정보법 제5조제1항-----

-----.

④ -----

공간정보법 제2조제4호-----

-----.

제4조의3(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

	<u>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u>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 ----- ---- <u>공간정보법 제26조</u> -----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공간정보법 제30조제2항</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생략)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② -----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u>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 ---- <u>공간정보법 제28조제1항</u> ----- ----- -----. <u><삭 제></u> <u>제6조의2(공간정보의 품질관리)</u> 국토교통부장관은 <u>공간정보법 제19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u>제6조의3(오류정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관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교육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u> <u>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관</u>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관	제7조(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등)

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은 제1항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장 :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

<신 설>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인 : 신분증, 제적등본 또

<신 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 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리인이 제2항제2호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 자는 ----- 정보통신망-----.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공 받은 자-----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 ----- ----- 해당 자료의 ----- ----- ----- ③ ----- 정보통신망----- ----- ----- 제9조(유통시스템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공간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②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신청자료 목록을 전산매체에 담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

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신 설>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삭 제>

<삭 제>

제3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

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신 설>

제6장 사무처리 등

<신 설>

제17조(실무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제공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

<삭 제>

제4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삭 제>

제5장 사무처리 등

제17조(실무협의회) -----

----- 국

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

연계·운영 및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지원-----

-----.

제18조(전산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지침 제정 등)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

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 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 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1. 제7조 및 제8조----- ----- 확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연 락 처	(044) 201 - 3495